

#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

## 1 기본 현황

### 사업개요

회 계	주택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		
사업비 (당해년도)	49,859천원	(국비)	(사비)49,859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실	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	차창훈 02-2133-7210	이규희 02-2133-7216	안대호 02-2133-7220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64,058	(x-) 49,859	(x-) △14,199	(x-) △22
기간제근로자등보 수	(x-) 6,658	(x-) 6,859	(x-) 201	(x-) 3
사무관리비	(x-) 47,400	(x-) 33,000	(x-) △14,400	(x-) △30
시책추진업무추진 비	(x-) 10,000	(x-) 10,000	(x-) 0	(x-) 0

###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
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○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6,859,000원*1인	=	6,859천원
사무관리비	○ 위원회 수당 15명*200,000원*8회	=	24,000천원
	○ 소위원회 수당 6명*250,000원*2회	=	3,000천원
	○ 속기사 수당 200,000원*20시간	=	4,000천원
	○ 간담회 등 2,000,000원	=	2,0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0,000,000원	=	10,000천원

### 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,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
사업근거

-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연례반복
- 지원대상 : 도시재정비위원회
- 회의개최 : 도시재정비위원회(매월2,4주 화요일 개최 및 필요시 소위원회 수시 개최)

추진경위

- 2006.12.4 :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초 구성

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9,859	

기간제근로자등보수	2019.01~2019.12	6,859	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지급
사무관리비	2019.01~2019.12	33,000	위원회 수당 지급 등
시책추진업무추진비	2019.01~2019.12	10,000	업무추진비 지급

## 4 사업 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본위원회 16회, 소위원회 2회 개최
2017년도	○ 본위원회 12회, 소위원회 3회 개최
2018년도	○ 본위원회 5회, 소위원회 2회 개최(18. 7월 기준)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재정비축진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

## 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75,293	(x-) 0	(x-) 0	(x-) 75,293	(x-) 66,373	(x-) 0	(x-) 8,920
2016	(x-) 75,363	(x-) 0	(x-) 0	(x-) 75,363	(x-) 62,605	(x-) 0	(x-) 12,758
2017	(x-) 74,481	(x-) 0	(x-) 0	(x-) 74,481	(x-) 53,725	(x-) 0	(x-) 20,756